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. 9. 25 선고 2019가단400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9. 9. 25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천안시 동남구 C 대 49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0, ㅈ, ㅊ,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69.75㎡ 지상에 있는 블록조 스투트지붕 단층 주택 약 48㎡, 벽체이용 목조 스투트 지붕 단층 창고 약 8.25㎡, 벽체이용 목기둥조 스투트지붕 단층 차양 약 13.5㎡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,  
나. 2018. 9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 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 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**판사임수희**

별지